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82
----------	-------

제출년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법제명 현행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0건
- 나. 인용조문 현행화 18건, 직위 현행화 1건
- 다. 상위법 및 관련법과 용어 통일 6건
- 라. 만 나이 정비 2건, 도로명 주소 정비 3건, 오기 정정 2건

3. 참고사항

- 가. 일괄개정조례안 : 【붙임 1】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다.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라.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마. 입법예고결과 :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 바. 기타 참고사항

- 1) 현행조례 : 【붙임 5】
- 2)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의 개정)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표의 연번 5 구분란 1)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란 4)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란 5)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그 밖의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란 6)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그 밖의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란 7)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4조(「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동1586-1번지”를 “석호로 144(사동)”로 한다.

제5조(「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를 “조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시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사동 1586번지”를 “차돌배기로 26(사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다만,공개모집에 의하여”를 “다만, 공개모집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로 한다.

제12조(「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 제71조제5항”을 “영 제71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7 중 제2호 가목과 나목”을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하고, 같은 란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별표 3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초지동 674-7”을 “광덕4로 51(초지동)”로 한다.

제14조(「안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를 “안산시 재난안전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재난상황근무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상황근무자”로 한다.

제16조(「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담당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7조(「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9조(「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개정)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을 “시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21조(「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24조(「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25조(「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조(「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성계획”)을 ““조성계획”이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기획경제실
입 안 자	의정법무과장	박 상 숙
	의정협력팀장	윤 인 숙
	담당자	김 서 우 (481-2719)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10명 이상의 안산시민(<u>만19세 이상</u>) ② (생략)	제6조(후보자 추천)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u>19세</u>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p> <p>11. ~ 14. (생략)</p> <p>②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p> <p>(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번</th> <th>구분</th> <th>기준</th> <th>수수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5</td> <td>관광관계</td> <td></td> <td></td> <td></td> </tr> <tr> <td>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td> <td>1건</td> <td>60,000원</td> <td></td> </tr> <tr> <td>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td> <td>1건</td> <td>50,000원</td> <td></td> </tr> <tr> <td>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td> <td>1건</td> <td>30,000원</td> <td></td> </tr> <tr> <td>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td> <td>1건</td> <td>15,000원</td> <td></td> </tr> <tr> <td>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td> <td>1건</td> <td>30,000원</td> <td></td> </tr> <tr> <td>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td> <td>1건</td> <td>15,000원</td> <td></td> </tr> <tr> <td>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td> <td>1건</td> <td>1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5	관광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p>조-----</p> <p>11. ~ 14. (현행과 같음)</p> <p>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p> <p>(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번</th> <th>구분</th> <th>기준</th> <th>수수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5</td> <td>관광관계</td> <td></td> <td></td> <td></td> </tr> <tr> <td>1) 종합테마파크업 허가 신청</td> <td>1건</td> <td>60,000원</td> <td></td> </tr> <tr> <td>2)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신청</td> <td>1건</td> <td>50,000원</td> <td></td> </tr> <tr> <td>3)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td> <td>1건</td> <td>30,000원</td> <td></td> </tr> <tr> <td>4)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td> <td>1건</td> <td>15,000원</td> <td></td> </tr> <tr> <td>5) 그 밖의 테마파크업 신고</td> <td>1건</td> <td>30,000원</td> <td></td> </tr> <tr> <td>6) 그 밖의 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td> <td>1건</td> <td>15,000원</td> <td></td> </tr> <tr> <td>7)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td> <td>1건</td> <td>1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5	관광관계				1) 종합테마파크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2)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신청	1건	50,000원		3)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4)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5) 그 밖의 테마파크업 신고	1건	30,000원		6) 그 밖의 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연번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5	관광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연번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5	관광관계																																																																												
	1) 종합테마파크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2)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신청	1건	50,000원																																																																										
	3)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4)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5) 그 밖의 테마파크업 신고	1건	30,000원																																																																										
	6) 그 밖의 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제4조(「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위치) 문화원사는 안산시 상록구 <u>사동1586-1번지</u> 에 둔다.	제2조 (위치) ----- ----- <u>석호로 144(사동)</u> ----- -.

제5조(「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해촉) 단장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중에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9조(해촉)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원의 자격과 위촉) ① ~ ⑤ (생략) ⑥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2. (생략)	제4조(구성원의 자격과 위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제8조(구성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8조(구성원의 해촉)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 ----- ----- ----- ----- ----- ----- ----- -----.</p>
<p>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⑤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p>	<p>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현 행	개 정 안
본 조례」에 따른다.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의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35조 제1항에 따라 ----- ----- ----- ----- -----.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 양시설의 명칭은 안산시립노인 전문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u>사동 1586번지</u> 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 ----- ----- ----- ----- <u>차돌배기로 26(사동)</u> ----- -----.
제3조(입소대상자) 요양원에 입 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및 입소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안산시 에 주소를 둔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을 필요로 하는자를 우선으로	제3조(입소대상자) ----- ----- ----- ----- ----- ----- <u>각 호의 어느 하</u> <u>나</u> ----- ----- -----.

현행	개정안
<p>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외에 주소를 둔 입소희망 대상자도 입소하게 할 수 있다.</p>	<p>----- ----- ----- -----.</p>
<p>1. 2. (생략) 3. <u>기타</u> 시장이 요양원 입소번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1.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p>
<p>제4조(비용) ① (생략) ②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징수하되, 그 금액은 <u>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u>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으로 한다.</p>	<p>제4조(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u> 따른 ----- -----.</p>
<p>제5조(퇴소) ①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p>	<p>제5조(퇴소) ① ----- --- <u>각호의 어느 하나</u>----- ----- -----</p>
<p>3. <u>허위</u> 등 부정한 <u>방법에</u>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u>기타</u>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p>	<p>3. <u>거짓</u> ----- <u>방법으로</u> ----- ----- 4. ----- <u>그 밖의</u> ----- ----- -----</p>
<p>5. (생략) ② 입소자가 <u>제5조제1항제3호</u>의</p>	<p>5. (현행과 같음) ② ----- <u>제5조제1항제3호</u>에</p>

현행	개정안
<p>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u>의한</u>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5. (생략)</p> <p>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수 있다.</p> <p>1. 수탁자가 <u>제7조의 규정에 의한</u>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p> <p>2. ~ 4. (생략)</p> <p>제11조(시설변경 금지) ① (생략)</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따른</u> ----- -----.</p> <p>5.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u>제7조에 따른</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시설변경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u>제1항에 따라</u> ----- ----- ----- -----.</p>

제9조(「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u>안산시 보조금관리 조례</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준용) ----- ----- ----- 「<u>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p>

제10조(「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8조(우선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 등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제8조(우선계약의 해지 등)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5. (현행과 같음)</p>

제11조(「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u>법인등기부등본</u>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 생산, 자재 유통 업체를 말한다.</p> <p>3.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u>에</u>----- ----- -----.</p> <p>3. 4. (현행과 같음)</p>

제12조(「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①·② (생략)</p> <p>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과 영 제71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영 별표 7 중 제2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영 제71조제6항-----</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별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p>																														
<p>[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금액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점 용 물 의 종 류</th> <th colspan="2">기 준 단 위</th> <th rowspan="2">점용료</th> </tr> <tr> <th>점용 단위</th> <th>기간 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 전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td> <td rowspan="2">1개</td> <td>1년</td> <td>850</td> </tr> <tr> <td></td> <td>1,250</td> </tr> <tr> <td></td> <td></td> <td>24,100</td> </tr> </tbody> </table>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1개	1년	850		1,250			24,100	<p>[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금액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점 용 물 의 종 류</th> <th colspan="2">기 준 단 위</th> <th rowspan="2">점용료</th> </tr> <tr> <th>점용 단위</th> <th>기간 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 전봇대,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td> <td rowspan="2">1개</td> <td>1년</td> <td>850</td> </tr> <tr> <td></td> <td>1,250</td> </tr> <tr> <td></td> <td></td> <td>24,100</td> </tr> </tbody> </table>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봇대,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1개	1년	850		1,250			24,1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1개	1년	850																												
			1,250																												
			24,1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봇대,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1개	1년	850																												
			1,250																												
			24,100																												

현 행					개 정 안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 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 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별표 3]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 과 기 준	과태료 상한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 과 기 준	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00만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 제2호	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00만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 제2호	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 제3호	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제13조(「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① (생 략)</p> <p>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u>초지 동 674-7</u></p>	<p>제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광덕4 로 51(초지동)</u></p>

제14조(「안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 ②·③ (생략)</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 <u>각호의 어느 하나</u>----- -----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제15조(「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u>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19조제1항에 따른 <u>안산시재난상황근무자</u>에 대한 일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안산시 재난안전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18조제1항에 따른 <u>안산시재난안전상황근무자</u>----- ----- -----</p>

제16조(「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교육발전 업무담당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 ~ 7. (생략)</p> <p>④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업무담당국장</u>----- ----</p> <p>1. ~ 7.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제17조(「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수익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 ④ (생략)</p> <p>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상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p>	<p>제23조(수익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p>

현행	개정안
<p>⑥·⑦ (생략)</p> <p>제24조(대부료의 요율 등) 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생략)</p> <p>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p> <p>3. ~ 7. (생략)</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24조(대부료의 요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 ----- ----- ----- -----</p> <p>3. ~ 7. (현행과 같음)</p>
<p>⑤·⑥ (생략)</p> <p>제3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략)</p> <p>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3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5.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p>③·④ (생략)</p>	<p>5.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19조제1항-----</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18조(「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지역건설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u>법인등기부등본</u>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노동자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 <p>-----</p> <p>---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p> <p>-----</p> <p>-----</p> <p>-----</p>

현행	개정안
<p>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p> <p>8. (생략)</p> <p>9.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u>법</u> <u>인등기부등본</u>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있는 지역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특허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신기술,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 기술을 말한다.</p> <p>10. ~ 12. (생략)</p>	<p>----- -----.</p> <p>8. (현행과 같음)</p> <p>9. ----- <u>법</u> <u>인등기사항증명서</u> ----- ----- ----- ----- ----- -----.</p> <p>10. ~ 12. (현행과 같음)</p>

제19조(「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u>지능정보화 기본법</u>」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u>디지털포용법</u>」 <u>제14조제3항</u> ----- ----- -----.</p>

제20조(「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만 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만 19세</u>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p>	<p>제2조(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19세</u> -----. -- <u>19세</u>----- ----- --.</p>

제21조(「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조(진료수가) 진료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u>의하여</u>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적용 징수한다.</p>	<p>제3조(진료수가) ----- ----- ----- <u>따라</u> ----- ----- -.</p>

제22조(「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조(계약의 해지)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23조(「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벤처기업”이란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벤처기업”이란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p> <p>4. ~ 6. (현행과 같음)</p>

제24조(「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p> <p>7. ~ 15. (생략)</p> <p>② (생략)</p>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p> <p>7. ~ 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25조(「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협의회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17조(협의회 개최)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26조(「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생략)</p>	<p>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략)</p> <p>②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p> <p>1. ~ 6. (생략)</p> <p>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 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u>기타 방법에 의하여</u>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과 같음)</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그 밖의 방법으로</u> ----- ----- -----.</p>
<p>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 ----- ----- ----- ----- ----- ----- -----.</p>
<p>제9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u>의하여</u>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공사시행자) ① ----- ----- ----- ----- ----- <u>따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27조(「안산시 상호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 -- “<u>시장</u>”이라 한다)----- ----- -----.</p>
<p>제5조(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구성을 위해 5년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u>조성계획</u>”)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p>	<p>제5조(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 ----- ----- “<u>조성계획</u>”이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p>